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모경종·최민희·서미화

윤건영 • 박희승 • 김영환

강훈식 · 홍기원 · 김한규

김남근 · 김문수 · 박민규

의원(12인)

찬 성 자: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전단 낙하 등에 따른 피해에 보상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시 국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 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의3 신설).

법률 제 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민방위사태 피해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시 적의 침투·도발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敵)의 침투·도발의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피해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32조의3(민방위사태 피해의 지
	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
	는 민방위사태시 적의 침투ㆍ
	도발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필
	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방
	위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통합방위법」에 따
	른 적(敵)의 침투・도발의 경우
	에는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
	는 재산피해의 지원 기준・절
	<u>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